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세입예산

○ 해당 사항 없음.

2. 세출예산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16억 1천 4백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1억 3백만원 대비 46.2%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1,103,491	1,103,491	1,613,786	510,295	510,295	46.2%	46.2%	
행 정 경 리	소 계	1,103,491	1,613,786	510,295	510,295	46.2%	46.2%	
	행정운영경비	158,091	158,091	273,481	115,390	115,390	73.0%	73.0%
	사 업 비	945,400	945,400	1,340,305	394,905	394,905	41.8%	41.8%

○ 202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3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4 예산	2023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1,103,491	1,103,491	1,613,786	510,295	510,295	46.2%	46.2%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945,400	945,400	1,340,305	394,905	394,905	41.8%	41.8%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945,400	945,400	1,340,305	394,905	394,905	41.8%	41.8%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34,116	34,116	47,591	13,475	13,475	39.5%	39.5%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813,144	813,144	775,865	△37,279	△37,279	△4.6%	△4.6%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8,140	98,140	516,849	418,709	418,709	426.6%	426.6%
행정운영경비	158,091	158,091	273,481	115,390	115,390	73.0%	73.0%
기본경비	158,091	158,091	273,481	115,390	115,390	73.0%	73.0%

II. 검토의견

1. 세출예산 검토

- 민생사법경찰단 2024년 세출 예산안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4천7백만원)”,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7억7천6백만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5억1천7백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3억 4천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7천 3백만원 등 전년(11억 3백만원) 대비 46.2% 증액한 16억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4 예산	2023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1,103,491	1,103,491	1,613,786	510,295	510,295	46.2%	46.2%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945,400	945,400	1,340,305	394,905	394,905	41.8%	41.8%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945,400	945,400	1,340,305	394,905	394,905	41.8%	41.8%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34,116	34,116	47,591	13,475	13,475	39.5%	39.5%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813,144	813,144	775,865	△37,279	△37,279	△4.6%	△4.6%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8,140	98,140	516,849	418,709	418,709	426.6%	426.6%
행정운영경비	158,091	158,091	273,481	115,390	115,390	73.0%	73.0%
기본경비	158,091	158,091	273,481	115,390	115,390	73.0%	73.0%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 이상 주요 증액사업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4천7백만원, 39.5% 증액)”,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5억1천7백만원, 426.6% 증액)” 2개 사업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산출기초에 따른 증액인지 여부와 사업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주요 증액사업 현황(20%)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3년도	2024년도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34,116	47,591	13,475	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전체 특사경 대상 대면 수사 실무 교육 재개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 증액 : 3,528천원 ▶ 원고료 증액 : 1,788천원 ▶ 교재인쇄비 증액 : 4,609천원 ▶ 중식비 추가·증액: 2,550천원 ▶ 교육운영비추가·증액:1,000천원
2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8,140	516,849	418,709	4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정보포털 기능 고도화 추진 전산개발비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 (증 398,553천원) ○ 수사정보포털 기능고도화 용역추가에 따른 사무관리비(제안서 평가 및 심의위원수당) 증액 (증 3,000천원) ○ 내구연한(6년) 초과 디지털포렌식용 분석서버 및 압수수색 현장용 노트북 교체에 따른 자산및물품 취득비 증액 (증 16,984천원)

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 동 사업은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사직무교육, 서울시 전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라 함) 수사실무교육 재개 등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적법절차에 의한 직무수행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3천4백만원) 대비 39.5% 증액한 4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34,116	34,116	47,591	13,475	39
사무관리비	10,116	10,116	23,591	13,475	133
국외업무여비	15,000	15,000	15,000	0	0
사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9,000	9,000	0	0

〈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강사료 = 7,560천원	○ 강사료 = 11,088천원
	- 강사료(기본직무교육) 360,000원 *7명*2회 = 5,040천원	- 특사경 기초직무교육 360,000원*2명*2회 = 1,440천원
	- 강사료(분야별핵심교육) 360,000원*7회 = 2,520천원	- 특사경 분야별 핵심교육 360,000원*2명*8회 = 5,760천원
	○ 원고료 12,000원*5시간*5매 = 300천원	- 서울시 특사경 수사실무교육 360,000원*9명*120% = 3,888천원
	○ 교재인쇄비 12,000원*94명*2회 = 2,256천원	○ 원고료 12,000원*29명*6매 = 2,088천원
		○ 책자인쇄비(교재) = 6,865천원
		- 특사경 기초직무교육 20,000원*25명*2회 = 1,000천원
		- 서울시 특사경 수사실무교육 34,500원*170명 = 5,865천원
		○ 서울시 특사경 수사실무 중식비 5,000원*170명*3일 = 2,550천원
		○ 교육운영비 1,000,000원 = 1,000천원
		증감사유
		○ 수사실무교육(서울시 특사경 전체) 대상 확대로 강사료, 교재인쇄비 상승 및 중식비, 운영비 추가 편성 등에 따른 증액
		○ 친환경 잉크사용(시장방침 제203호, 15%) 등 교재비 단가 현실화에 따른 교재인쇄비 증액

- 동 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1천만원) 대비 133.0% 증액한 2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수사실무 교육을 서울시 특사경 전체로 교육 대상 확대에 따른 강사료, 교재인쇄비 상승 및 중식비, 운영비 추가 편성 등에 따른 증액으로, 자치구의 특사경은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교육의 어려움이 있는바, 서울시 특사경 전체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수사실무 교육은 서울시 전체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음.
- 다만, 특사경 수사실무교육 인원을 170명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자치구별 특사경 인원은 총 454명으로 교육대상 인원 보다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자치구별 특사경 인원 현황 >

(단위 : 명)

구분	부서명	인원	비고	
총 계		454		
소 계		238		
서울시	본청	민생사법경찰단	101	본청 (224) 사업소 (14)
		소방재난본부	98	
		대기정책과	10	
		교통지도과	9	
		중대재해예방과	6	
	사업소	도로사업소	11	
		공원녹지사업소	3	
소 계		216		
자치구	25개 자치구	216	종로(8), 중구(17), 용산(7), 성동(16), 광진(7), 동대문(7), 중랑(7), 성북(8), 강북(6), 도봉(16), 노원(2), 은평(4), 서대문(16), 마포(5), 양천(7), 강서(5), 구로(7), 금천(3), 영등포(8), 동작(7), 관악(7), 서초(16), 강남(19), 송파(7), 강동(4)	

※ 또한, 2022년 12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Ⅰ)』에 따르면, 특사경의 교육훈련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결과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73.4%, 업무량이 많아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의견이 47.4%, 제공되는 교육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1.9%로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이 요구되고, 영역별 교육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사례중심의 전문수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90.2%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형법총칙, 형사소송법 등 법률 지식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8%였음.¹⁾

-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기본직무교육 결과 보고에서 교육생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피의자신문 관련 교육 시간과 수사 실무 교육 시간의 확대, 교육기간 동안 현안업무 최소화 필요, 인지 수사 교육 필요, 기록물 정리 및 피의자 특정 방법 교육 필요, 수사 사례 중심의 강의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직원들은 실제적인 수사 실무와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직무 교육에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의 ‘국외업무여비’는 올해와 동일한 1천 5백 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1천만원 전액을 불용하였고, 올해는 벤치마킹 등에 대한 심사 강화로 전액(1천5백만원)을 불용시킬 예정임.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국외업무여비(1천5백만원)’를 전액 불용시킬 예정인바,

1) 박준희 외 6인,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12., 223면.

- 이는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2)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국외업무여비’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21년 제2회 추경 전액감액)	0	0	0
2022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0,000	0	10,000	100%
2023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0	15,000	100%
2024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국외업무여비	15,000	-	-	-

- ※ 2022년 코로나 일상화에 따라 국외공무출장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반기까지 국외공무출장제한 유지로 불용
- ※ 2023년 국외공무출장이 허용되었으나, 벤치마킹 등에 대한 심사 강화로 불용

- 또한, ‘국외업무여비’는 연례적·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최근 지방세 관계법 개정²⁾에 따른 세수 규모 축소³⁾,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연례·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가 필수불가결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세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국내경제는 하반기 이후 경기여건 개선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2)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감소되었음(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2023년 9월, 6면 참조).

나)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 동 사업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단속 사각지대의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수사 활동(17개 분야 76개 법률 위반사항 수사)을 위한 차량 및 현장 활동 여비, 행정장비 구매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8억1천3백만원) 대비 5.0% 감액된 7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813,144	813,144	775,865	△37,279	△5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7,693	7,693	7,893	200	3
사무관리비	295,516	295,516	396,620	101,104	34
공공운영비	45,145	45,145	29,684	△15,461	△34
국내여비	191,760	191,760	43,680	△148,080	△7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0	18,000	26,400	8,400	47
특정업무경비	236,880	236,880	253,440	16,560	7
재료비	15,000	15,000	15,000	0	0
배상금등	900	900	1,000	100	11
자산및물품 취득비	2,250	2,250	2,148	△102	△5

-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차량임차료는 전년(1억5천6백만원) 대비 62.6% 증액한 2억 5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라는 규정에 따라 전기승용차를 임차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승용차는

일반승용차보다 임차료가 높아 편성예산이 증액(18대 임차, 1억5천6백만원 → 12대 임차, 2억5천4백만원)된 것이나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온실가스 무배출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사업무 차량도 친환경 차량으로 임차하려는 것으로 보임.

〈 2024년 수사차량 임차 산출근거 〉

(단위 : 원/대)

품명	규격 (연령한정)	단위	수량	산출기초근거(월)			산 출 가 격	
				A렌터카	B렌터카	C렌터카	단가(월/대)	금액
수사 차량 임차	다인승 전기승용 (21세)	대	1	2,567,400	2,829,200	1,863,300	1,860,300	1,860,300
	다인승 전기승용 (26세)	대	10	2,462,790	2,781,900	1,690,000	1,690,000	16,900,000
	승합차 (21세)	대	1	1,380,500	1,371,700	957,600	957,600	957,600
		대	18	28,575,800	32,019,900	19,720,900	공급가액 (1개월)	19,720,900
※ 총계 : 19,720,000원×12개월=236,650,800원(부가세포함)							합계 (12개월)	236,650,800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차량임차료 = 156,420천원	○ 차량임차료 = 254,328천원 - 전기승용차(7인승) 및 승합차 254,328,000원*1식 = 254,328천원
	증감사유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기관 친환경 차량 의무 도입(임차포함)에 따른 전기차량 임차 등에 따른 증액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이 조에서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 2021년 6월 참조.

〈 2023년 차량 현황('23.10월말기준) 〉

연번	차종	모델명	대수	비고
1	승용차량	K5	1	'23. 11월 전기승용차(EV6)구매 입차 완료에 따른 계약변경 및 11월 반납 완료
2		K3	5	
3		카니발	9	
4	승합차량	스타렉스	3	

- 또한, 전기승용차 임차 등으로 '공공운영비' 중 차량유류비는 전년(3천1백만원) 대비 75.8% 감액된 7백 5십만원으로 전기승용차 도입으로 차량 유류비 절감에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하겠음.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공공운영비	○ 차량유류비 180,000원*18대*12월*0.8 = 31,104천원	○ 차량연료비 = 7,524천원 - 전기차량(17대) 32,000원*17대*12월 = 6,528천원 - 승합차량(1대) 83,000원*1대*12월 = 996천원

- 다만,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차량은 기후환경본부가 구매하여 제공한 전기 승용차 6대와 내년에 임차하려는 11대 등 총 17대의 전기차를 보유하게 되나,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이 위치하고 있는 남산청사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2개로 기후환경본부를 통해 추가적인 전기차 충전기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남산청사
✕

📍 서울시

🕒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충전기

구분	충전기 타입	운전	상세위치
완속 (7kW 단독)	AC완속	사용가능	남산청사
완속 (7kW 단독)	AC완속	상대미확인	남산청사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nportal/monitor/evMap.do>)-가까운 충전소 찾기 참조(최종방문 2023년 11월 7일).

- 마지막으로, 수사차량 임차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같은 업체와 임차 계약을 맺고 있는바, 차량 임대차 계약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 하는 등 수사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수사차량 임차현황 〉

(단위 : 천원, 23.10월말 기준)

연도	차량대수		계약 업체	임차계약금액 (예산액)	계약 기간	계약 방식	차량종류				비고
	자가	임차					승차인원	경유	휘발유	전기	
2019	2	21	퍼시픽 렌타카(주)	145,464	'19년1월 ~ '19년12월 (12개월)	공개경쟁	5인승:8 9인승:10 12인승:3	13	8	-	
2020	2	19	퍼시픽 렌타카(주)	165,528	'20년1월 ~ '20년12월 (12개월)	공개경쟁	5인승:6 9인승:10 12인승:3	13	6	-	'20.3 자차(화물트럭) 1대 시민건강국 관리전환
2021	1	18	퍼시픽 렌타카(주)	130,152 (143,400)	'21.1월 ~ '22.12월 (24개월)	제한경쟁입찰	5인승:6 9인승:9 11인승:3	12	6	-	'21.8 자차(화물트럭) 1대 도시계획국 관리전환
2022	-	18	퍼시픽 렌타카(주)	130,152 (131,100)							
2023	-	18	퍼시픽 렌타카(주)	148,599 (156,420)	'23.1월 ~ '23.12월 (12개월)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5인승:6 9인승:9 11인승:3	12	6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 '23. 11월 전기승용차 6대(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보조금) 구매 및 임차 완료에 따라 계약변경 및 임차차량(5인승 6대) 반납 완료.

III

2024년 임차 계획(안)

사업명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차량 임차(용역)

계약목적

- 현장확인, 잠복근무, 압수수색 등 원활한 수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사환경에 맞는 다인승 차량 임차 진행
- 서울시 2050 탄소 중립 달성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승용차 도입

계약기간 : '24.1.1. ~ '25.12.31.(24개월)

- 1차기간 : '24. 1. 1. ~ '24. 12. 31. (12개월)
- 2차기간 : '25. 1. 1. ~ '25. 12. 31. (12개월)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2년),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 1차 공고 이후 임차용역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추진

- 다음으로, 수사장비로 초소형 바디캠과 초소형 액션캠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자산및물품취득비	○ 수사장비 및 특사경 보안장비 도입 = 2,250천원 - 동영상 촬영용 캠코더 875,000원*2대 = 1,750천원 - 대용량 배터리 500,000*1대 = 500천원	○ 수사장비 및 특사경 보안장비 도입 = 960천원 - 초소형 바디캠 220,000원*2대 = 440천원 - 초소형 액션캠 260,000원*2대 = 520천원 ○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198,000원*6대 = 1,188천원
	증감사유	
	○ 효율적 잠복수사 추진을 위해 녹화영상 현장 확인이 가능하고 180° 촬영 기능을 갖춘 바디캠 추가 구매 필요	

※ 바디캠(body camera)은 몸에 작은 카메라를 부착해 출동한 현장의 주변 상황을 녹화하는 일종의 블랙박스이고, 폴리스캠(police camera)이라고도 부름.

※ 액션캠(action camera)은 스포츠, 레저, 액션 등에서 사용되는 초소형 광각 캠코더를 말함.

- 다만, 바디캠 등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지난 9월 개정·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의2에 따라 채증용으로 바디캠 등을 통한 개인영상정보 수집(촬영) 등은 가능하지만 인권 침해 등 우려를 낳지 않기 위해 사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p>「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일부개정 2023.3.14., 시행 2023.9.15.)</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p> <p>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p> <p>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p> <p>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의 범위)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

- 동 사업은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의 기능고도화, 노후된 디지털포렌식용 분석서버 및 압수수색현장용 노트북 교체 등을 위한 것으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고도화를 위하여 신규로 ‘전산개발비’ 4억원을 편성하여, 전년(9천8백만원) 대비 427.0% 증액된 5억 1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98,140	98,140	516,849	418,709	427
사무관리비	1,800	1,800	4,800	3,000	167
공공운영비	91,324	91,324	91,496	172	0
전산개발비	0	0	398,553	398,553	100
자산및물품 취득비	5,016	5,016	22,000	16,984	339

- 동 사업 중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고도화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4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전산개발비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고도화 398,553,000원 = 398,553천원
	증감사유	
	○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의 불편한 기능을 개선(9종)하고 신규기능(6종)을 추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을 적용하여 산정한 전산개발비 신규 편성	

-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은 각종 수사관련 자료를 수기로 관리하던 것을 송치 및 처분결과까지 수사업무의 표준절차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2018년 12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수사관의 수사업무 활용을 위한 기능 개선이 필요하고, 영장 청구, 포렌식 지원 절차 관리, 압수물 관리, 수사장비 관리 등 수기 처리중인 수사업무의 전산화 필요에 따라 기능개선(9종)과 신규기능(6종)을 추가 개발하여 수사정보 포털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임.

II

운영 현황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요

- 목적 : 수사업무 투명성 확보와 자료 공유 위해 수사 전과정 전산화
- 주요 기능
 - (사건 관리) 입건사건·내사 등록, 검찰처분·법원판결 결과 등록·조회
 - (자료 공유) 수사팀별 수사샘플 공유, 수사실적 통계, 수사현황 모니터링
 - (신청·승인) 조사실 사용, 피의자 범죄경력 조회 등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고도화 추진 계획”, 2023.06., 재인용

- 이는 수사관들이 수기로 처리 중인 영장 청구(사전검토 ~ 승인 ~ 결과관리 전산화), 압수물 관리, 수사 장비 관리 등 전산화와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이용 중 불편한 기능 등의 개선을 통하여 수사관의 업무능력 향상과 수사 성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결과에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발주시 “국가형사사법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 검찰 제출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과업을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예비검토) ① 다음 해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의 목적, 이용자 등 사업의 적용 범위, 구현기능, 소요비용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예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예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청기관의 장에게 예비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예비검토 결과를 제13조의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정보화 타당성 심사의견에서도 “개인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므로,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바,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 방지 등을 반영하여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술검토결과	<p>[개인정보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 주관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 사업유형 : 계속 - 개인정보 취급여부 : ○ -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을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므로 DB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시 [붙임2]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추후 시스템을 통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업무 위탁 시 위탁계약을 작성하고 위탁 관리·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이므로,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을 해야 함.
---------------	---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